
프랑스의 재도전 정책 및 창업 생태 환경 조사 출장 보고서

2016. 11.

금융경제 연구부

1.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16.11.22.(화)~11.26(토) /3박5일간

□ 출 장 국 : 프랑스 (파리)

○ 중소기업청 성낙영 재도전성장과장('16.11.19~'16.11.26, 런던·파리 출장)
파리에서 합류 및 일정 동반

□ 면담대상 : Banque de France(중앙은행), De l'Economie et
Finance(경제재정산업부), 에콜42(프랑스 창업사관학교), Paris&Co

○ 프랑스중앙은행 신용정보(Central Credit Registry) 담당자 등

□ 출장목적

○ 프랑스의 재도전 정책 및 창업 생태 환경 조사*

* 중소기업청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기 신용회복 제도 연구」에 프랑스의
금융·조세·신용관리 방안 등 다양한 재도전(창업) 정책 사례 조사 및
활용

2. 출장자 명단

직 위	성 명	여권정보	연락처
KDI 연구위원	구 자 현 (Koo, Jahyun)	.	·jahyun.koo@kdi.re.kr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장	성낙영	-	·nysung1@korea.kr

3. 세부 일정

일자	장소	시간	일 정
11.22.(화)	인천	14:00	항공기 탑승(KE901) - 인천→샤를드골 - 18:30 파리 도착 - 호텔명 : Best Western Premier Marais Grands Boulevards(3성급)* * 주소 : 112 Boulevard de Sebastopol, 75003 Paris * 스트라스부룩 생드니역 도보 2분
11.23.(수)	파리	10:00~12:00	Paris&Co 창업지원 담당자 * Mr. Dusheng GONG (Asia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14:00~16:00	에콜42 창업지원 담당자
11.24.(목)	파리	10:00~12:00	Squire Patton Boggs
		14:00~16:00	경제재정산업부 창업관련 금융·세제 담당자 * Mr. Florent Bertrand (Correspondent for Korea, Japan, Singapore)
11.25.(금)~ 11.26.(토)	파리 인천	13:10 08:00	샤를드골(대한항공-에어프랑스 KE5902 탑승) → 인천 공항

◆ 프랑스 [파리] ◆

1 Paris&Co 방문(11.23)

[방문개요]

- 일 시 : '16. 11. 23. (수)
 - 장 소 : Paris&Co 회의실
 - 면담자 : Dusheng Gong(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 주요 면담내용 : Paris&Co 운영현황 및 창업지원 주요 프로그램 등
-
- (개요) 파리의 경제개발 및 혁신기관으로 스타트업 보육을 통해 파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
 - (지원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 데이터,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 (신규 고객 발굴 및 프랑스/유럽 시장 진출 지원) 프랑스 및 유럽 창업 생태계 소개, 파리 기반 세계적 창업가 만남 등
 - (제품 및 서비스 현지화 지원) 디자인 사고과정 워크숍 등
 - 투자 유치 지원
 - (프랑스에서 창업기업의 입지를 확대) 프랑스에서 법인설립 관련 개인 코칭, 전문회계사 미팅 등
 - 숙소 및 사무공간(역세권 지역으로 WIFI가 가능한 풀 옵션으로 제공)
 - 창업보육센터 주관 이벤트 참가(연100회 개최)
 - (방문목적) 창업자 지원 정책 및 운영프로그램 등 조사
 - (주요내용)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특강, 네트워킹 등 프랑스 현지 내 창업활동), 사무공간 등

- 파리엔코 입주기업 평균 연령대는 30대 중반이며 생존율은 85% 이상으로 나타남
- 파리엔코의 가장 큰 장점은 프랑스 내 주요 대기업이 파트너사로 있어 창업기업의 R&D, 마케팅 등 지원
- 입주기업 선정평가 시 기준은 기술력, 미래성, 시장성을 보며 1년씩 입주가 가능하고 바비오 등 분야에 따라 1년 이상 입주 가능

[주요 특징]

- 파리엔코 2개 역할 : 투자, 혁신
- 투자를 위해 비즈니스프랑스와 협력하여 파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랑스 내 창업 인큐베이팅 선두주자
- 66개의 스타트업을 지원 중
- 관광업, 스포츠, 농림업,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
- 창진원과 협업을 하여 창업기업(1개 사) 입주 중
 - * 파킹투어스 권영해 대표(센서(IoT)를 활용한 실시간 주차예약 서비스)
- 랜딩팩 프로그램 보유
 1. 오픈스페이스 제공
 2. 숙박공간과 지원프로그램을 외국 스타트업에 지원 중
 3. 프랑스 시장에서의 진출 가능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2 에꼴42 방문(11.23)

[방문개요]

- 일 시 : '16. 11. 23. (수)
- 장 소 : 에꼴42 회의실
- 면담자 : Nicholas Sandirac(교장)
- 주요 면담내용 : 에꼴42 운영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등

- (방문목적) 에꼴42(프랑스 창업사관학교) 운영현황 및 견학
- (주요내용) 에꼴42 운영현황, 교육내용, 네트워킹, 선발 및 운영 프로그램 등
 - 프랑스 통신기업 SFR 대표가 개인적으로 출자하여 에꼴42를 설립하였으며 1년 예산은 약 80억 정도 소요
 - 18~30살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3년 단위 과정으로 운영 중(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할 시 조기 졸업도 가능)
 - 현재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입학해 있으며 여학생의 비율은 약 11% 정도로 낮음
 - 입학과정은 온라인을 통한 간단한 소프트웨어 스킬 관련 시험이 있으며 시험통과 후 최종 선발됨(약 4주 소요)
 - 선발된 학생은 학교 내 모든 비용이 무료(식비 제외)로 제공되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 발급도 가능함
 - 학생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이나 선생님, 시험이 없으며 팀 또는 개인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로젝트의 경우 레벨0~21까지 있으며 팀이나 개별 학생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평가는 학생 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기반 학생들이 입학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IT 엔지니어 등 취업 또는 관련 분야 창업

- 또한, 프랑스 내 정규대학과 연계하여 학사 학위도 받을 수 있음
-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삼성, 엘지 등)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학생들 참여가 가능함
- 학교 내부에는 파리 내 뮤지엄과 파트너십을 맺어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2주에 한번씩 교체가 되고 있음

3 Squire Patton Boggs 방문(11.24)

[방문개요]

- 일 시 : '16. 11. 24. (목)
- 장 소 : Squire Patton Boggs 회의실
- 면담자 : Alexandre Le Ninivin(Avocat à la Cour)
- 주요 면담내용 : 프랑스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 창업·재창업 정책 현황 등

- (방문목적) 프랑스 TMA(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 기능 및 활동, 구조조정 제도 관
- (주요내용) TMA의 기능 및 역할, 프랑스의 구조조정 제도 및 파산 프로세스 등

① TMA 역할

- 프랑스 TMA는 기업의 파산 지원을 위해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협회로 영국의 Insolvency Practitioner와 비슷하나
- 별도 교육과정이나 자격증이 있지는 않음

② 프랑스 구조조정 및 파산 절차

- 프랑스 파산절차는 상법에 의해 지배되며 파산법의 목적은 경제활동의 지속, 고용 유지, 부채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촉진하는데 있음
- 프랑스의 파산법은 5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별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취할 것이냐가 결정됨

절차		내용
1. Pre-Insolvency	1.1 Ad hoc proceedings (특별(즉석) 절차)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사를 돕기 위해 혹은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1.2 Conciliation proceeding (조정 절차)	관계자들(parties)이 협의에 이르도록 돕는 일종의 조정(중재) 절차
2. Insolvency	2.1 Safeguard proceedings (보호 절차)	conciliation과 rehabilitation 절차의 중간 단계로서, 회사를 '구제'하는 데에 목적
	2.2 Rehabilitation proceedings (복귀 절차)	회사의 사업 행위, 고용을 보존하고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음
	2.3 Liquidation proceedings (청산 절차)	채무자가 만기까지 채무를 갚지 못하고 rehabilitation proceedings가 실패했거나 불가능할 때 - 결과적으로 회사가 사업을 접어야(정리해야)할 상황이거나 회사를 팔아야할 경우

1.1 Ad hoc proceedings(특별(즉석) 절차)

- (목적) 미리 위기를 중재하는 데에 있으며 채무자가 사업체를 스스로 경영할 수 없고 조언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mandataire ad hoc이 임명되며 모든 절차는 기밀로 진행

* mandataire ad hoc은 이 절차를 감독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가리킴

- (신청 조건) 모든 회사에게 열려있는 절차이며 지역 Tribunal de Commerce(영국의 상법부와 비슷함)나 Tribunal de Grande(영국의 고등법원과 비슷함)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대표만이 요청할 수 있음
- 회사의 사정과 관련된 조건은 없으며,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는 회사더라도 절차 요청이 가능하며 협의를 통해 회사 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에 목적이 있음
- (mandataire ad hoc의 역할) 해당 Tribunal(법원 조사/심사위원회)의 장이 임명한 에이전트가 mandataire ad hoc으로 그의 미션도 Tribunal의 장이 결정

* 대부분의 mandataire은 주(연방)에서 임명된 파산관리전문가

- * 임명되기 전 24개월의 기간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그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은 적이 없어야하고, 임명되기 전 5년의 기간 동안 상업 법정에 있어 판사로 활동한 적이 없어야함
- * Mandataire ad hoc의 임명 건은 Procureur de la Republique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통지되어야 함
- * mandataire ad hoc에게 지불될 보수는 mandataire ad hoc과 회사가 공청회 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해당 Tribunal의 장이 결정하게 됨
- 강력한 도덕상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음
- (장점) 기밀유지 및 유동성
- * Ad hoc proceedings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또는 Mandataire의 임명에 대해 아는 모든 사람들은 기밀로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민사상 처벌 대상이 됨
- * 절차의 진행기간, 시작기간에 있어 법적인 규제는 없으며, 이는 회사가 여러 상황 (구조조정, 더 긴 임금일자를 위한 협상, 고객 혹은 공급자(공급회사)와의 협상, 큰 분쟁 결의안(해결), 주주들간의 갈등 등)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 서곡(prelude)으로 mandat ad hoc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1.2 Conciliation Proceedings(조정 절차)

- (목적) 채무자와 계약자간의 협의를 찾는 것으로, 이는 파산을 피하기 위함이며 Conciliateur는 공정하게 절차에 임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모든 절차는 기밀로 유지됨
- (신청 조건) 회사가 입증된 혹은 예견된 법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채무가 만기되고 45일 안에는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음
- (Conciliateur의 역할) 4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되며 법원에 의해 임명됨
- * Conciliateur는 대부분 주(연방)에서 임명된 파산 전문가이거나 과거에 mandataire ad hoc이었던 사람

-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와 주채권자들 그리고 계약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 회사 구조, 회사의 경제활동의 지속, 고용유지(구조조정,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종료, 분할양도, 정리해고계획 등)에 관한 제안을 함
- * '14년 프랑스 국회에서는 conciliateur에게 회사가 buyer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prepack sale(미리 포장하여 팔아넘기기)'을 통한 거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 **(협상의 승인)** 협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 되어야 하며 승인을 받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와 같음

승인방법	조건
협의와 관련있는 관계자들(parties)의 공동 요청에 따라 해당 Tribunal의 장의 결정으로 승인되는 경우	- 협상이 성사되는 데로 만기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다고 선언한 회사일 경우 - 협상이 성사 되는대로 납입을 끝내는 회사일 경우 이 승인의 경우 * 이 승인은 기밀로 유지됨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Tribunal로부터의 승인	- 채무자는 협상이 성사되는 데로 만기에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어야 함 - 협상의 조건(terms)은 회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추구 - 협상은 서명을 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이익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함

- 승인 결정은 제3자, 즉 협상의 문서화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음
- Tribunal은 관계자들이 협상에 이르는 대로승인 결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협상의 상세한 내용은 아님)을 정리해 놓아야 함
- **(협상의 효과)** Tribunal에 의해 승인된 협의는, 어떤 결함이나 잘못된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의 결론을 고려하여 정해진 결정에 대한 저항을 막는 효력을 지님
- 승인된 협의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소송과 개별 채권자들이 채무 금액을 지불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해있는 재산과 자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유예시킴

- (장점) 회사가 채무를 만기 때 갚지 못하더라도 45일의 기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음
- (Conciliation proceedings의 실패) 채무자는 반드시 8일 이내에 conciliateur의 임명을 종료하는 혹은 협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 procedure de redressment(시정 절차)의 시작 혹은 청산(liquidation)의 시작을 요청해야 함

1.3 Safeguard Proceedings(보호 절차)

- '05년부터 프랑스에서 유효하며 미국의 “Chapter 11”의 프랑스 버전이라 할 수 있음
- 모든 절차는 공개되며 회사가 만기까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회사가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고 고용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며 부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회사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고안됨

* 오직 채무자 자신만이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신청 조건) 채무자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고 채무자가 만기까지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절차의 시작)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Tribunal이 불리며 Judgement d'ouverture(첫 번째 오프닝 심사)때, Tribunal은 judge, mandataire de justice, administrateur을 임명

* judge : 절차를 감독하는 심사위원

* mandataire de justice : 주(연방)의 규제를 받고 채권자들의 집단이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전문가

* administrateur : 주(연방)의 규제를 받고 채무자의 회사 경영을 감독하거나 회사경영을 돕는 것에 책임이 있는 전문가

- Tribunal은 6개월의 ‘관찰 기간’을 열고(공소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추가 가능) 이 기간 동안 CEO와 administrateur가

safeguard plan에 착수하고 특정 채무의 감가상각을 위해 채권자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함

- 절차가 시작되었다고해서 채무자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administrateur가 갖고 있지 않는 권리와 영향력을 지니고 행정(관리)상의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모든 채권자들은 그들의 채무 총액을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간 내에 고지해야 함
- administrateur는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놓여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2가지 위원회(①재정 관련 기관들로 구성, ②주 공급회사(공급자)로 구성)에 채권자들을 모두 소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safeguard plan의 개발에 참여하여야 함

* 15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졌을 경우

* 총 매출량이 2백만 유로 이상이 될 경우

* 그의 회계 장부가 법정회계감사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공인회계사에 의해 증명되었을 경우

- 만약 회사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음
- administrateur에 의해 수집된 정보에 따라 Insolvency Judge는 회사 CEO의 도움을 받아 재정, 사업 보고를 준비하고 safeguard plan을 제안 혹은 rehabilitation/liquidation proceedings의 시작을 제안
- 관찰기간 administrateur는 새로운 투자자들이나 회사 지분을 위한 바이어를 찾는 시도를 할 수 있음
- (Safeguard Plan의 내용) 지불 계획과 CEO가 제공하게 될 개런티, 고용인들과 관련된 조치(정책), 해고, 구조조정, 주식자본에 있어서의 변화, 특정 재산의 양도불가능, 한 개 이상 거래 활동의

추가 혹은 종료

- (Safeguard Plan의 승인) 두 위원회(위원회가 없을 경우 채권자들에 의해서)에서 plan이 승인을 받은 후 plan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 법원은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이후 위원회의 모든 원들이 plan에 의한 법적의무를 지니게 됨
- 만약 위원회에서 혹은 법원에서 plan을 승인하지 않으면, 모든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payment options에 대해 협의, 상의
- (관찰기간 Safeguard Proceedings의 효과) 파산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법적 결정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갚는 것을 금지(파산 절차 시작 이후 발생한 채무를 갚는 것을 허가)
- 파산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법적 결정은 모든 개인의 지원과 상관없이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administrateur는 관찰기간 급박하고,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용인들을 해고할 수 있음(정리해고)
- (Safeguard Plan 실행단계의 효과) 최대 10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채무자가 그의 의무를 plan 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실현하지 못할 경우 Tribunal은 plan의 실행을 공소관(검사)의 조언에 따라 종료시킬 수 있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할 수 있음
- (장점) 예방단계로, 회사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고려하여 만기까지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 단계의 조치사항
- (safeguard proceedings의 실패) 채무자는 반드시 rehabilitation 또는 liquidation 절차의 시작을 요청해야 함

1.4 Rehabilitation Proceedings(복귀 절차)

- 채무자가 만기에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차는 채무 납입과 채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 또한 연장시켜줌
- rehabilitation plan을 통한 사업의 지속 혹은 제3자에게 a sale-of-business plan에 따라 사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
- administrateur의 역할은 청산을 막게 하는 것
- (신청 조건) 채무자가 만기까지 채무를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작되며 채무자는 만기까지 채무를 다 갚지 못한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rehabilitation proceedings를 신청해야 함

* 만약 신청하지 못할 경우 형사상의 제제(처벌/벌칙)를 받을 수 있음

- 채권자들, 법원장, 공소관(검사) 또는 법원에 rehabilitation proceedings를 신청할 수 있음
- Conciliation에 실패할 경우, 채무자는 conciliation이 종료됨을 알리는 결정의 고지 또는 협상의 승인을 거부하는 마지막 결정으로부터 8일 이내에 rehabilitation proceedings를 요청
- (절차의 시작) 법원은 6개월 간의 관찰기간을 시작하게 되며 ① 관리자(채무자를 돕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 (safeguard proceedings에서의 역할과 동일)), ②채권자들을 대표하는 자, ③감독 위원, ④고용인 대표를 임명하게 된다:
- 관리자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을 평가해야하고, 회사가 처한 상황의 원인, 잠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관찰기간은 최대 18개월(6+6+6, safeguard proceedings에서와 동일)로 이 기간 회사는 구조조정 계획 및 청산 계획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 회사를 구조조정(회사 지속 또는 매각)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

* 강제적인(의무적인/필수적인) 청산 절차 하에 청산 여부

- 채무자가 성공가능성이 있는 rehabilitation plan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사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을 시행할 수 있음
- * 관리자는 입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법원은 법률에 기반하여 처리
- (사업체의 이전) 관리자는 데이터 룸을 준비하게 되고, 잠재적 바이어는 그들의 제안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고용 보호, 비즈니스 플랜, 가격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선택하게 됨
- (rehabilitation proceedings의 실패) plan의 미비 또는 사업체 이전을 못했을 경우 채무자 혹은 administrateur는 청산 절차의 시작을 요청해야 함

1.5 Liquidation Proceedings(청산 절차)

- liquidateur의 모든 계약을 종료하고, 자산을 팔며,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역할을 함
- (신청 조건) rehabilitation proceedings가 가능하지 않은, 만기에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무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
- 채권자, 채무자, Tribunal 또는 공소관(검사)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미결인 conciliation proceedings가 없을 경우에 가능함
- 사업체 이전은 청산 절차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데, 이전의 목표는 회사 활동의 지속, 고용인 유지, 전체로든 일부로든 부채를 지불하는 데에 있음
- (절차의 시작) safeguard 또는 rehabilitation proceedings동안 회사가 지속되거나 사업체 이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 관찰기간 그 어느 때라도 청산 절차가 시작 될 수 있음
- 법원은 liquidator를 임명하게 되는데, liquidator는 경영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며 채권자들의 관심사(이익)을 대변하게 됨

- 예외적으로, 회사는 청산절차기간 동안 몇 달 정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administrateur가 임명되어 있는 아주 큰 회사를 제외하고 liquidator에 의해 통제
- liquidator는 채무자의 자산을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야만 하며, 여기에서 얻은 수입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됨
- 자산은 법원에서 결정된 sale of business plan에 의해 팔려나가며 이는 파산 재판관(insolvency judge)에 의해 인가되어야 함
- liquidator가 임명되고 한달 이내에 Tribunal이 보통 절차 또는 간략 절차를 결정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절차의 효과)** 사업체 이전 계획 또는 회사 해체
 - 법원에서 채무자의 회사가 sale-of-business에 의하여 팔릴 수 있다고 결정되면, 청산 판결은 그러한 경매의 실행을 위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진행됨(3개월, 공소관(검사)의 요청이 있다면 추가 3개월 가능)
 - 제3자는 회사 전부 매입 또는 중요한 일부분 매입에 대한 제안을 하고 tribunal(법원 조사/심사위원회)는 가장 좋은 제안을 선택
 - 만약 회사를 매입하겠다는 요청(제안)이 없으면 회사는 해체됨
 - 해체 전, 고용인들은 모두 해고되어야 하며 채권자들은 돈을 지불받아야 함
 - 새로운 매입자에 의해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고용인들은 정리 해고 당하게 되며 만약 필요하다면 정리 해고의 비용은 보험체제로 추정될 수 있음
 - 채권자들은 사업체 경매의 진행에 따라 돈을 지불받게 되는데, 법에 의해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대로 지불받게 됨
 - 청산은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들이 받아야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청산절차 시 특정 경우에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으나, 채권자들이 돈을 다시 지불 받는 경우는 극히 어려움

4 [Ministere De L' Economie 방문(11.24)]

[방문개요]

- 일 시 : '16. 11. 24. (목)
- 장 소 : Paris&Co 회의실
- 면담자 : Nicolas Gorodetska, Florent Bertrand
- 주요 면담내용 : 프렌치테크 운영 프로그램 등

○ (개요) 프랑스 경제부에서는 스타트업 사업화 및 보육을 통해 파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 '17년까지 약 70여개 창업팀을 지원 예정

* '16년에는 23개 창업팀 참가

○ (지원내용) '프렌치테크 티켓'을 통해 프랑스 내 창업 관련 자금, 보육,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 프로젝트/팀 당 45,000 유로 자금 제공(자금 사용은 사업 시 필요한 용처로 자유롭게 쓸 수 있음)
- 파리 등 프랑스 전역체 걸친 총 41개 인큐베이터 중 한 개 기관에서 12개월 간 보육 지원
- 최종 선발팀에게는 빠른 프랑스 체류 허가권(비자) 취득 제공
- 매월 네트워킹 이벤트, 프랑스 내 저명한 기업가와의 연계 후속, 투자자와 함께하는 데모데이(연간 2회) 등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
- 참가팀의 현지 행정 업무(체류 허가, 지원금, 세금, 보험 등)를 돕기 위한 상시 안내 데스크 운영
- 프랑스 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도록 현지 적응에 필요한 경제 연착륙 팩, 도시별 지정된 파트너사의 실용적 특가 가이드 제공

- (신청조건) 예비창업팀 또는 해외법인 설립이 완료된 창업팀(3인 이내)
 - * 팀 내 최대 1명의 프랑스인을 포함할 수 있음
 - 영어 구사가 가능한 창업팀(전체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
 - * 창업팀의 경우 1년 간 프랑스에 거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본 프로젝트에 100% 참여하여야 함
 - 프랑스에서 기 설립된 기업(본사 또는 자회사)는 신청 불가
- (선정조건) 창업팀 선정은 파트너 보육기관 및 후원사, 투자자들이 평가에 참여하며 프랑스를 기반으로 발전 가능성이 유명한 팀을 선정함